

발행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문의 | 02-786-0190

발행인 | 오승환
팩스 | 02-786-0191

주소 | (140-791)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1, 202호
메일 | kasw01@naver.com

담당 | 기획조정실 송광성
신청 | Issue & Focus 신청하기

당당한 사회복지사와 함께하는
협회가 되겠습니다



제20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오 승 환

안녕하십니까.

제20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으로 취임한 오승환입니다. 먼저 귀한 선택과 애정 어린 관심을 보여주신 모든 사회복지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제 저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으로서 그동안 멈춰있던 협회의 시간을 다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동안의 짐채를 벗어나 새로운 50년을 열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회장직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전문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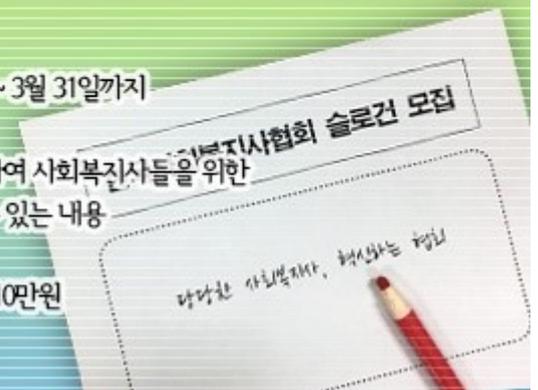
슬로건 형식 및 신청자격

- 협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발전적인 협회를 보여줄 수 있는 내용
- 제20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의 공약 등 참고하여 협회를 알릴 수 있는 내용
- 25자 이내 구성
- 2017년 ~ 2020년 까지 사용할 예정
-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 중 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

바로가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슬로건을 모집합니다

- 모집기간 : 2017년 3월 20일 ~ 3월 31일까지
- 슬로건 내용
 - 협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발전적인 협회를 보여줄 수 있는 내용
- 상금
 - 최우수상 30만원, 우수상 10만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KOREA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회원 여러분, 2017년 연회비 연회비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 회원들의 권익증진을 위한 단체입니다.
회원의 의무인 사회복지사 연회비 납부를 통해 회원의 권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Hot Issue

전문사회복지사 도입,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발의

-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의원(보건복지위원회, 충북 서원구)은 전문사회복지사를 신설하고, 유명무실화 된 사회복지사 3급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2017.3.22.) 하였음.
-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복지현장의 수요가 다양화되고, 사회복지분야가 전문화되는 경향에 따라 전문사회복지사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영역에 특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전문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1급 자격자로서 관련분야의 경력을 갖추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1급과 2급은 현행처럼,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1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을 갖추거나 교육 과정을 이수한자에게 2급을 부여함.
- 발의 의원은 오제세(대표발의)를 비롯해, 강창일, 김철민, 박정, 양승조, 윤소하, 윤호중, 이종걸, 이철희, 인재근, 총 10명임.



위의 "전문사회복지사도입,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발의" 내용은 추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사회복지정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측 손가락 모양을 누르면 '사회복지정책' 메뉴로 이동합니다.

제11회 사회복지사의 날·협회 창립50주년 기념 및 제20대 협회장 취임식 개최 안내

- 일시: 2017년 4월 19일 (수) 14시~16시
-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

이슈엔포커스와 함께하던 "Welfare News" 는 '협회 홈페이지 > 복지정보 > 복지뉴스'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뉴스 바로가기

제15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은 전국 17개 시·도 협회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로 가능합니다.

1급 합격여부 확인 및 발급신청 방법 안내

2017년 신청하세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사업은 산림복지소외자가 각종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인당 10만원의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수당수급자 · 장애이동수당수급자
- 지원내용**
 - 바우처 카드(1인당 10만원) 지원
 - ※ 지원금액은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17년 1월 23일~ 예산 소진 시 까지
- 사용기간**
 - 카드 발급 후 ~ 2017년 12월 31일 까지
 -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회수되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현금으로 교환 될 수 없음
- 신청문의**
 - 전화 문의 : 042-719-4026 / 4042 (평일 : 09:00-18:00)
 - 이용권 홈페이지 : www.forestcard.or.kr
 - 진흥원 홈페이지 : www.fowi.or.kr

사용처

-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
- ※ 이용 가능한 산림복지시설은 이용권 홈페이지(www.forestcard.or.kr) 에서 확인 가능

· 숙박비 및 프로그램 체험료 등 사용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이용권 홈페이지(www.forestcard.or.kr)
- 우편 신청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 이너스빌 209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협력팀 이용권 담당자 앞 (단, 신청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보건복지 관련 정책 국회 접수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5인)

-제안일자 : 2017-03-15

-제안이유 :

현행법에서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아동정책의 수립에 있어 아동관련 단체의 장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정책의 대상인 아동을 단순히 어른의 보호와 지원 하에서만 온전히 성장할 수 있는 대상으로만 여길뿐, 아동의 주체적 정책참여나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아동이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서 자리매김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아동 관련 정책수립에 아동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매년 아동총회를 개최 하는 등 아동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권리 등을 명시하여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항부터 7항까지 및 제14조의2 신설 등)



보건복지부 입법 행정예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이 2016년 4월 1일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로 통합되어 운영됩니다. 입법·행정예고 된 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해당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입법·행정예고 된 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해당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간 : 2017.03.21 ~ 2017.04.30

- 개정이유 및 내용 : 후견인 후보자의 요건으로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을 추가 하도록 함(안 제3조) - 후견인 후보자의 요건에 법인 추가 및 결격사유 명확화

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및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운영, 입원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요건, 정신건강 증진사업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직장가입자에게 부과하는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 기준 변경(안 제69조제4항제2호 및 제71조제1항)

3) 보험료 상한 및 하한 근거 일원화(안 제69조제6항 신설, 제70조제1항, 제71조제1항, 제72조제1항)

4) 지역보험료 부과 요소에서 평가소득 제외(안 제72조제1항, 제77조제2항) 등

정신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기간 : 2017.03.03 ~ 2017.04.12

- 개정이유 및 내용 :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중증정신질환자로 축소 정의하고 전 국민 대상의 정신건강증진의 장을 신설하며, 비자의 입원·퇴원 제도를 개선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 해소 및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정신보건법('16.5.29. 전부개정, '17.5.30. 시행) 개정(제명 「정신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입법예고

- 기간 : 2017.02.16 ~ 2017.03.28

- 개정이유 및 내용 :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폐지, 재산보험료 부과 축소 및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의 적정부담을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추진

1) 피부양자 인정기준 위임 근거 명확화(안 제5조)